

#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5
----------	-----

제출년월일 : '97. 2.

제안자 : 안산시장

## □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95.8.4) 및 동법시행령 개정('96.1.19), 동법시행규칙 개정('96.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중 일부분을 개정하고
- 현행 조례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 □ 개정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로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 토지 및 건물소유자, 점유자의 청결 의무조항을 규정(안 제4조)
- 쓰레기 규격봉투중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소량건설폐기물봉투” 공급규정을 신설함(안 제13,18조)
- 쓰레기 규격봉투에 공익광고 및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9조)
-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함(안 별지1)
- 페스티로폼 및 의류를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함(안 별표2)

## □ 참고사항

###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24조, 제26조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6조

###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 입법예고기간 : '96.9.25 ~ '96.10.14(20일간)
- 입법예고결과 : 이의신청 없음.

※안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인상에 관한사항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개정함.

### < 이 유 >

-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이 입법예고를 통하여 사전에 공고될 경우 시민 또는 판매상의 사전 대량구입 비치행위 (사재기)가 발생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대다수 시민의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음.

### ○ 물가대책회의에 관한 사항

- 일 시 : '97. 2. 3 15:00
- 결 과 : 자립도 50% 적용 인상

##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을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으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동조제2호본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호단서중 "영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를 "법제24조, 영제2조,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배출자"로 하며, 동조제3호중 "일반폐기물(이하"일반폐기물"이라 한다)"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며, 동조제5호중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제3조로하며 제1항및 제2항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청결유지) ①시장은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시장은 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대청소계획을 수립, 매년 공고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이상 당해 토지·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제목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2장에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6조제목중 "일반폐기물관리구역제외등"을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 지정"으로 하고, 본문중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시행규칙제7조 제1항"으로 하며,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7조제목중 "일반폐기물분리보관및수거"를 "생활폐기물배출자의처리협 조"로 하고, 동조"제1항내지 제7항"을 "제2항내지 제8항"으로 하고, 제 2항및 제3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제1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처리시설을 설치 활용하여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해야 한다.

제9조제목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일 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0조제목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가 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생활계폐 기물"로 한다.

제11조제목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일반폐 기물"을 "폐기물"로, "환경달러"을 "홍보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12조제목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일 반폐기물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관할구역안에서 배 출되는 폐기물"로 "시행규칙제7조"를 "시행규칙제6조"로 "수집·

운반·처리"를 "수집·운반·보관·처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관리구역내 일반폐기물수거"를 "관할구역안에서배출되는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한다.

제13조제목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항 "법제13조제4항"을 "법제13조제3항"으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며, 동항 "제3호중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량의 건설폐기물(300Kg 이하)의 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

제15조제목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 동조제1항의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 "법제17조"를 "법제26조"로 하며, "일반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동조제2항, 제3항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한다.

제16조제목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며, 동조제1항중 "법제17조"를 "법제26조"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사람으로"하며,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능력 또는 일반폐기물처리능력"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능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법제17조"를 "법제26조"로 한다.

제17조제목중 "영업자에"를 "폐기물처리허가업자에"로 하고, 동조본문

중 " 법제17조" 를 " 법제26조" 로 하며, "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을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로 하며, 동조 제2호내지 제4호중 " 일반폐기물" 을 " 생활폐기물" 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일반용봉투 다음에 " 와" 를 삭제하고,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를 삽입하며, " 사업장쓰레기" 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을 삽입하며, 동조제2항중 " 투명하게" 를 " 투명 또는 불투명하게" 로 하며, " 흰색" 을 " 흰색 또는 엷은 오렌지색" 으로 색깔은 엷은청색 다음에 " 으로" 를 삭제하고,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엷은오렌지색으로 불투명하게" 를 삽입한다.

제1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 쓰레기봉투에 공익광고 또는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경우 광고문안규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다음에 " 제4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 을 삭제한다.

제27조내지 제28조를 삭제한다.

제5장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하여 제26조 다음에 둔다.

제29조를 제27조로 한다.

제30조를 제28조로 한다.

[별표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중 제5호 플라스틱류 다음에 제6호 페스티로폼류란 및 제7호 의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6. 페스티로폼류	페스티로폼 - 야채용기 - 과일포장용기 - 생선상자 - 접시등  ※전자제품의 스티로폼은 소비자가 대리점에 직접 배출	- 이물질및 부착상표등을 완전히 제거후 투명 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야채, 과일포장용기, 생선상자, 접시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제외대상:1회용컵라면,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7. 의 류	섬유류를 사용하여 만든 의류	- 깨끗하게 세탁후 묶어서 배출

[별표4] 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5] 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7] 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97.4.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쓰레기 봉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97.5.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지1]

##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두께 및 가격

구 분	봉 투 용 량 (ℓ)	봉 투 가 격 (가로×세로, cm)	호 칭 두 께 (mm)	봉 투 가 격
일 반 용	5	25 × 35	0.020	90원
일 반 용	10	33 × 40	0.020	180원
일 반 용	20	41 × 49	0.025	360원
일 반 용 (공공용)	50	56 × 67	0.045	900원
일 반 용 (공공용)	100	71 × 85	0.050	1,800원

[별지2]

##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

<p>쓰레기는 이부분까지만 담아 묶어 주십시오.</p>	<p>쓰레기는 이부분까지만 담아 묶어 주십시오.</p>	<p>쓰레기는 이부분까지만 담아 묶어 주십시오.</p>
<p>안산시 마크 쓰레기봉투(20ℓ) - 일반용 -</p>	<p>안산시 마크 쓰레기봉투(50ℓ) - 공공용 -</p>	<p>안산시 마크 쓰레기봉투(5ℓ) - 음식물쓰레기전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내놓아야만 수거합니다.</li> <li>2.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페스티로폼, 의류)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li> <li>3. 이봉투외 다른 봉투나 용기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페스티로폼, 의류)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li> <li>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li> <li>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페스티로폼, 의류)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li> <li>2. 이 봉투는 반드시 음식쓰레기만을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li> <li>3. 이 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li> </ol>
<p>안 산 시 장</p>	<p>안 산 시 장</p>	<p>안 산 시 장</p>
<p>※문의사항은 안산시 청소사업소(전화 811-336~9)나 해당 동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p>※문의사항은 안산시 청소사업소(전화 811-336~9)나 해당 동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p>※문의사항은 안산시 청소사업소(전화 811-336~9)나 해당 동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별지3] 소량배출건설폐기물 P.P 포대제작사양

안 산 시 마 크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포대(50 ℓ) -

1.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페스티로폼, 의류)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정에서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포대외에 다른 포대등을 사용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산 시 장

※ 문의사항은 안산시 청소사업소(811-336~9)나 해당 동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배출자 주소 :

성명 :

전화번호 :

소량배출건설폐기물수수료기준 및 P.P포대규격

폐기물 종류	부과기준	부과금액	규격(가로×세로)	두께
소량배출건설폐기물	50 ℓ	2,500원/장	90cm × 56cm	0.05mm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안산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1. .... .....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1. ....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1. ....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1. .... .....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2. ....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2. ....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2. ....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2. ....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 .....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3. .... .....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3. .... .....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3. .... .....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 ..... 폐기물.....	4. .... ..... 폐기물.....	4. .... ..... 폐기물.....	4. .... ..... 폐기물.....





현행	개정안
<p>①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재생 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p> <p>②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 시설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 보관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기재생략)</p> <p>④ (기재생략)</p> <p>⑤ (기재생략)</p> <p>⑥ (기재생략)</p> <p>⑦ (기재생략)</p>	<p>②생활폐기물.....</p> <p>..... 생활폐기물.....</p> <p>.....</p> <p>③생활폐기물.....</p> <p>.....</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⑧ (현행 제7항과 같음)</p>
<p>제9조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p> <p>② ~ ⑤ (기재생략)</p>	<p>제9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p> <p>.....</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가정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p> <p>② ~ ⑤ (기재생략)</p>	<p>제10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p> <p>.....</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헌	행	개	정	안
<p>제11조(일반폐기물의적정배출을위한 조치)</p> <p>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등 주민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별표 1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p> <p>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p>	<p>제11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p> <p>①..... 폐기물..... 홍보물.....</p> <p>②..... 폐기물.....</p>	<p>제12조 (일반폐기물의 처리등) ① 시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p> <p>②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 일반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폐기물배출자가 직접 차량등에 실어주는 타종식으로 수거할 수 있다.</p> <p>③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등 그 성상이 다른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p>	<p>제12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시행규칙 제6조..... 수집·운반·보관·처리.....</p> <p>②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p> <p>③..... 건설폐기물..... 폐기물.....</p>	

.현 행	개 정 안
<p>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u>일반폐기물</u> 처리를 위탁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u>일반폐기물처리업자</u>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p> <p>.....</p> <p>④.....</p> <p>..... <u>생활폐기물</u>.....</p> <p>.....</p> <p>... <u>폐기물처리업자</u>.....</p> <p>.....</p> <p>.....</p>
<p>제13조 (<u>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u>) ①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u>일반폐기물</u>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기재생략)</p> <p>2. (기재생략)</p> <p>(<u>신설</u>)</p> <p>3. <u>제1호 및 제2호</u>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p> <p>② ~ ③ (기재생략)</p>	<p>제13조 (<u>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u>) ①법 제13조 제3항.....</p> <p>..... <u>폐기물</u>.....</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u>소량의 건설폐기물(300Kg이하)의 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u></p> <p>4. <u>제1호 내지 제3호</u>.....</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 (<u>일반폐기물</u>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u>일반폐기물</u>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u>일반폐기물 처리업자</u>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u>생활폐기물</u>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p> <p>.. ①.....</p> <p>..... <u>생활폐기물</u>.....</p> <p>.....</p> <p>.....</p> <p>..... <u>법 제26조</u>..... <u>폐기물처리업자</u>.....</p> <p>.....</p> <p>..</p>

. 현 행	개 정 안
<p>②시장은 <u>일반폐기물</u>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u>일반폐기물 처리업자</u>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u>생활폐기물</u>..... ..... <u>폐기물처리업자</u>..... .....</p>
<p>③시장이 <u>일반폐기물</u>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u>일반폐기물처리업자</u>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u>일반폐기물</u>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u>일반폐기물 처리업자</u>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③.... <u>생활폐기물</u>..... ..... <u>폐기물처리업자</u>..... ..... <u>생활폐기물</u>..... <u>폐기물 처리업자</u>.....</p>
<p>④<u>일반폐기물</u>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u>생활폐기물</u>..... .....</p>
<p>1~9 (기재생략)</p>	<p>1~9 (현행과 같음)</p>
<p>⑤ (기재생략)</p>	<p>⑤ (현행과 같음)</p>
<p>⑥시장은 <u>일반폐기물</u>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u>일반폐기물</u>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시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⑥..... <u>생활폐기물</u>..... <u>생활폐기물</u>..... .....</p>
<p>제16조 (<u>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u>) ①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u>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u>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산시의 관할 구역내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u>사람</u>으로 하며, <u>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u> 원활을</p>	<p>제16조 (<u>폐기물처리업 허가</u>) ①법 제26조.. <u>폐기물처리업</u>..... <u>사람</u>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 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발생량 및 기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능력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시장은 일반폐기물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제17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처리 능력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li> <li>2.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li> <li>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li> <li>4.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li> </ol>	<p>②... 폐기물.....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 ..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능력.....</p> <p>③... 폐기물..... ..... 법 제26조... ..... 폐기물.....</p> <p>제17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법 제26조.....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li> <li>생활폐기물.....</li> <li>생활폐기물.....</li> <li>... 생활폐기물.....</li> </ol>

현행	개정안
<p>제3장 쓰레기봉투 관련사항</p> <p>제18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등)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u>사업장쓰레기</u>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p> <p>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u>투명하게</u>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u>흰색</u>,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u>엷은 청색</u>으로 한다.</p> <p>③ (기재생략)</p> <p>제19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 ④ (기재생략) (<u>신설</u>)</p> <p>⑤제18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5와 같다.</p> <p><u>제4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u></p> <p>제27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등) ① ~ ② (기재생략)</p> <p>제28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① ~ ② (기재생략)</p>	<p>제3장 쓰레기봉투 관련사항</p> <p>제18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등) ①... ....., <u>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u>, ..... ..... <u>사업장생활계폐기물</u>, <u>음식물전용봉투</u>에는 <u>음식물쓰레기</u>만을 ..... .....</p> <p>②..... <u>투명 또는 불투명하게</u>..... <u>..흰색 또는 엷은 오렌지색</u>..... <u>..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불투명하게</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시장은 쓰레기봉투에 공익광고 또는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경우 광고문안규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삭제)</p>

현행	개정안															
<p><u>제 5 장 보 칙</u></p> <p>제29조 (권한의 위임) (기재생략)</p> <p>제30조 (시행규칙) (생략)</p> <p>(별표2)</p>	<p><u>제 4 장 보 칙</u></p> <p>제27조 (권한의 위임) (현행 제29조와 같음)</p> <p>제28조 (시행규칙) (현행 제30조와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종 류</th> <th style="width: 33%;">품 목</th> <th style="width: 33%;">배출요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 류	품 목	배출요령	(신 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종 류</th> <th style="width: 33%;">품 목</th> <th style="width: 33%;">배출요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 페스티로폼</td> <td> <p><u>페스티로폼</u></p> <p>- 야채용기</p> <p>- 과일포장용기</p> <p>- 생선상자</p> <p>- 접시등</p> <p>※전자제품의 스티로폼은 소비자가 대리점에 직접배출</p> </td> <td> <p>- 이물질 및 부착</p> <p>상표등을 완전히 제거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p> <p>- 야채, 과일포장용기, 생선상자, 접시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p> <p>※제외대상: 1회용 컵라면, 도시락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의 류</td> <td> <p>섬유류를 사용하여 만든 의류</p> </td> <td> <p>- 깨끗하게 세탁후 묶어서 배출</p> </td> </tr> </tbody> </table>	종 류	품 목	배출요령	6. 페스티로폼	<p><u>페스티로폼</u></p> <p>- 야채용기</p> <p>- 과일포장용기</p> <p>- 생선상자</p> <p>- 접시등</p> <p>※전자제품의 스티로폼은 소비자가 대리점에 직접배출</p>	<p>- 이물질 및 부착</p> <p>상표등을 완전히 제거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p> <p>- 야채, 과일포장용기, 생선상자, 접시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p> <p>※제외대상: 1회용 컵라면, 도시락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p>	7.의 류	<p>섬유류를 사용하여 만든 의류</p>	<p>- 깨끗하게 세탁후 묶어서 배출</p>
종 류	품 목	배출요령														
(신 설)																
종 류	품 목	배출요령														
6. 페스티로폼	<p><u>페스티로폼</u></p> <p>- 야채용기</p> <p>- 과일포장용기</p> <p>- 생선상자</p> <p>- 접시등</p> <p>※전자제품의 스티로폼은 소비자가 대리점에 직접배출</p>	<p>- 이물질 및 부착</p> <p>상표등을 완전히 제거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p> <p>- 야채, 과일포장용기, 생선상자, 접시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p> <p>※제외대상: 1회용 컵라면, 도시락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p>														
7.의 류	<p>섬유류를 사용하여 만든 의류</p>	<p>- 깨끗하게 세탁후 묶어서 배출</p>														

##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두께 및 가격

## □ 현 행

구 분	봉 투 용 량 (ℓ)	봉 투 가 격 (가로×세로, cm)	호 칭 두 께 (mm)	봉 투 가 격
일 반 용	5	25 × 35	0.020	80원
일 반 용	10	33 × 40	0.020	150원
일 반 용	20	41 × 49	0.025	300원
일 반 용 (공공용)	50	56 × 67	0.045	750원
일 반 용 (공공용)	100	71 × 85	0.050	1,500원

## □ 기 정 안

구 분	봉 투 용 량 (ℓ)	봉 투 가 격 (가로×세로, cm)	호 칭 두 께 (mm)	봉 투 가 격
일 반 용	5	25 × 35	0.020	90원
일 반 용	10	33 × 40	0.020	180원
일 반 용	20	41 × 49	0.025	360원
일 반 용 (공공용)	50	56 × 67	0.045	900원
일 반 용 (공공용)	100	71 × 85	0.050	1,800원

##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85
----------	-----

제출년월일 : '97. 2. 27.

제 출 자 : 보사·환경 위원회  
황호명위원장의10인

### 1. 수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쓰레기봉투 가격을 20% 인상할 경우 급격한 인상을로써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어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인상을을 한자리 범위내에서 수정함.

### 2. 수정주요골자

- (별지1)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및 가격중 일반용 10ℓ 봉투 가격 "180원"을 "160원"으로, 20ℓ 봉투가격 "360원"을 "330원"으로, 일반용(공공용) 50ℓ 봉투가격 "900원"을 "800원"으로, 100ℓ 봉투 가격 "1,800원"을 "1,600원"으로 수정하고,
- (별지3) 소량배출건설폐기물 수수료기준 및 P.P포대 규격중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부과금액 50ℓ "2,500원"을 "2,200원"으로 수정함.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1)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및 가격중 일반용 10ℓ 봉투가격 "180원"을 "160원"으로, 20ℓ 봉투가격 "360원"을 "330원"으로, 일반용(공공용) 50ℓ 봉투가격 "900원"을 "800원"으로, 100ℓ 봉투가격 "1,8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별지3) 소량배출건설폐기물수수료 기준 및 P.P포대 규격중 소량배출건설폐기물 50ℓ 부과금액 "2,500원"을 "2,200원"으로 한다.

##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별지1) 쓰레기 봉투의 용량·크기 두께 및 가격 단위: 원					(별지1) 쓰레기 봉투의 용량·크기 두께 및 가격 단위: 원				
구 분	봉 투 용 량 (ℓ)	봉투가격 (가로× 세로, cm)	호 청 두께 (mm)	봉투 가격	구 분	봉 투 용 량 (ℓ)	봉투규격 (가로× 세로, cm)	호 청 두께 (mm)	봉투 가격
일반용	5	25×35	0.020	90	일반용	5	25×35	0.020	90
일반용	10	33×40	0.020	180	일반용	10	33×40	0.020	160
일반용	20	41×49	0.025	360	일반용	20	41×49	0.025	330
일반용 (공공 용)	50	56×67	0.045	900	일반용 (공공 용)	50	56×67	0.045	800
일반용 (공공 용)	100	71×85	0.050	1,800	일반용 (공공 용)	100	71×85	0.050	1,600
(별지3) 소량배출건설폐기물수수료기준 및 P.P포대 규격					(별지3) 소량배출건설폐기물수수료기준 및 P.P포대 규격				
폐기물 종 류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규 격 (가로 × 세로)	두께	폐기물 종 류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규 격 (가로 × 세로)	두께
소 량 배 출 건 설 폐 기 물	50 ℓ	2,500 원/장	90 cm × 56 cm	0.05mm	소 량 배 출 건 설 폐 기 물	50 ℓ	2,200 원/장	90 cm × 56 cm	0.05mm